

울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청원번호 : 제 7 호
- 청 원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김연지 외 3,946명
- 소개의원 :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강남 4선거구)
- 접수일자 : 2019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9월 3일

2. 청 원 요 지

- 강남구 울현동 55-1 및 77-2에 소재한 울현공원은 세곡2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지에 조성한 4만7천평의 넓은 공원임.
- 당시 '초지공원'이라는 주제로 토질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꽃과 어린 나무들을 심었으나, 공원이 조성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나무들이 말라 죽고 꽃밭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 강남구 세곡지역(자곡, 울현, 세곡동)은 다자녀가구 주거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 이에, 울현공원도 성수동 서울숲 및 양재동 시민의숲처럼 울창한 숲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설명 요지 (김 태 호 의원)

- 율현공원은 나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직경 8cm미만의 작은 나무들이 듚성듬성 있을 뿐 수목량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공원임.
- 청원인의 의견에 따라 서울숲이나, 시민의숲처럼 울창한 숲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4. 율현공원 현황

공원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77-9
- 면 적 : 157,535 m^2 (3호: 52,143 m^2 , 4호: 105,392 m^2)

공원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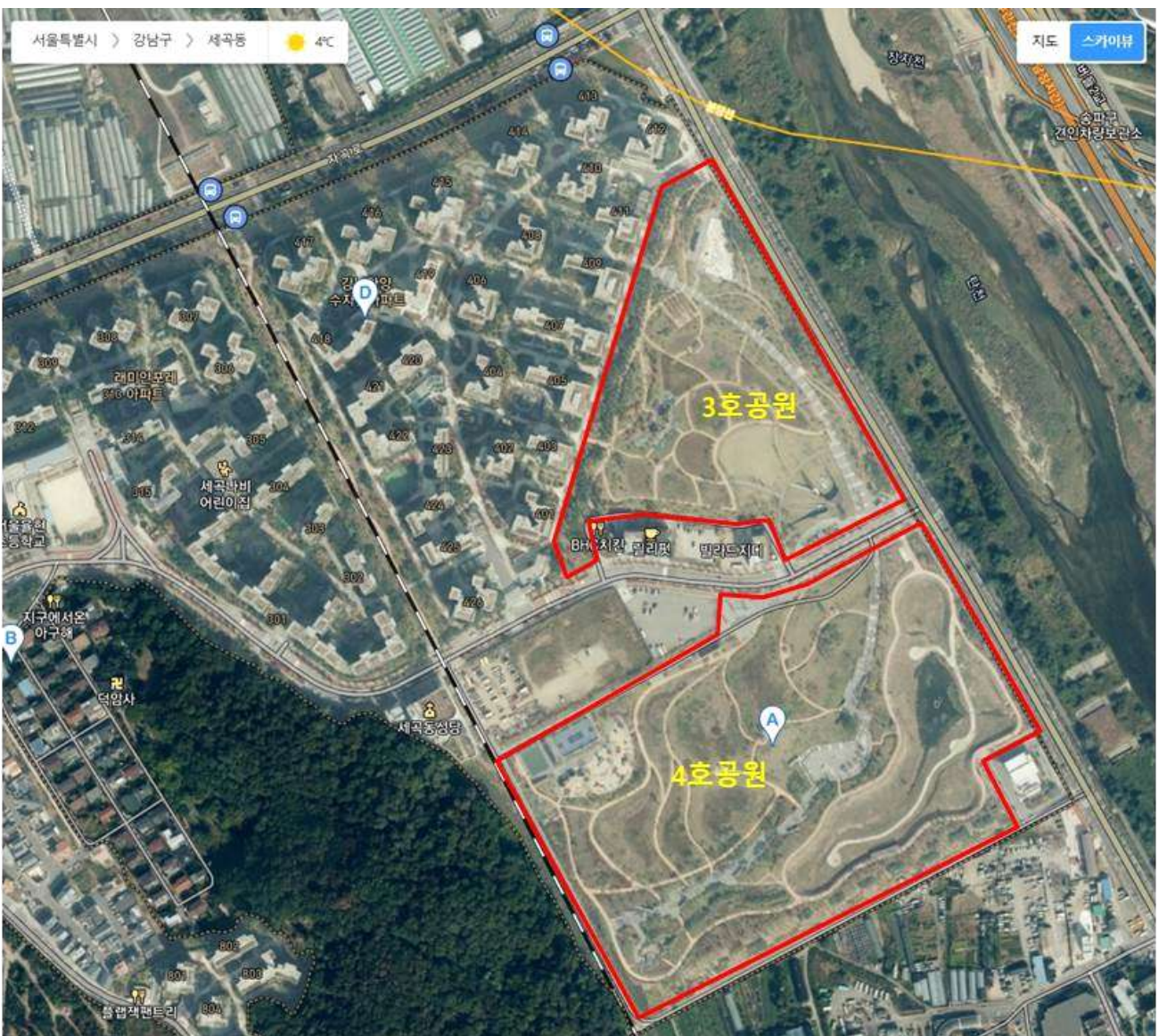
- 2009. 12. 03 :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8호)
- 2011. 12. 05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SH공사)
- 2014. 10. 16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8호)
- 2016. 11. 01 : 율현공원 개원
- 2016. 12. 19 : 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3,4호 통합)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7호)
- 2018. 1. 12 : 시설물 인수

관리조직

- 관리인력 : 2명 (일반직 1, 관리운영 1)
- 현장인력 : 15명 (공무직 6, 시설경비 1, 기간제 5, 공공근로 3)

□ 시설현황

- **조경시설** : 잔디광장, 수경시설(벽천, 분수 및 연못), 교목 소나무 등 65종 6,253주, 관목 회양목 등 31종 163,754주, 초화류 구절초 등 33종 137,990본
- **운동시설** : 다목적구장(농구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운동기구)
-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회장실(2동), 근로자 대기실(2동), 음수대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2개소)
- **기타시설** : 저류지(연못) 22,819m², 팔각정자 1, 파고라형 정자 3동, 조형물 등



< 2018년 율현공원 현황 > (<https://map.kakao.com>)

5. 담당부서 의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율현공원은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기능의 회복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조성이 완료되고 2018년 1월 우리시에 인수인계된 공원이나,
- 신규공원으로서 수목이 부족하고, 식재되어 있는 수목도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식재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청원과 같이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율현공원 내 수목식재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식재함이 타당함.

6.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 이 재 효)

가. 개요

- 본 청원은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리공원인 율현공원에 나무가 부족하고 생육이 불량하므로 보다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숲공원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임.

나. 검토의견

1) 공원조성관련 기준 검토

- 녹지 및 공원 면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기준을 가지고 있음.

- 공원 또는 녹지의 수목 식재량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즉 공원관련 법령에는 녹지 면적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녹지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식재하는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다만, 2002년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 도시공원의 식재밀도 기준이 유일한 근거 규정임 (첨부 1 참고).

2) 율현공원 수목 식재 현황

- 3호공원과 4호공원으로 구분된 율현공원은 전체 157,535㎡의 면적에 교목 4,272주(상록 991주, 낙엽 3,281주), 관목 137,715주(상록 24,578주, 낙엽 113,137주)가 식재되어 있음.
- 식재된 수목 이외에 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일부 공간에 군락식재¹⁾(교목 1,981주, 관목 26,039주)가 되어 있음.

1) 군락식재? 도시의 자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모방하여 재현하는 식재기법으로, 자연의 식생구조를 토대로 식물군집 구성을 설계목표로 하며, 전문적인 녹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식재방법임.

< 율현공원 수목 식재 현황 >

구 분		3호공원	4호공원	합 계		
공원면적		52,143m ²	105,392m ²	157,535m ²		
주요도입 수종	교목	상록	440주	551주	991주	4,272
		낙엽	1,042주	2,239주	3,281주	
	관목	상록	8,520주	16,058주	24,578주	137,715
		낙엽	52,475주	60,662주	113,137주	
군락식재 모델도입 수종	교목		1,981주	1,981주		
	관목 및 초화	23,450본	26,039주 114,540본	26,039주 137,990본		

- 율현공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으로 근린생활 권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조경식재밀도 기준은 1m²당 교목 0.051주, 관목은 0.224주임.
- 율현공원 면적과 수목식재량을 분석해본 결과 군락식재를 제외한 조경식재 수목 식재 밀도는 1m²당 교목 0.027주, 관목 0.874주임.
 -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과 비교하면 교목은 절반에 불과하며, 관목은 4배 이상 식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율현공원 수목 식재밀도 >

구분	조경 식재량		군락식재 포함		조경설계 기준
	식재량(주)	식재밀도(/m ²)	식재량(주)	식재밀도(/m ²)	
교목	4,272	0.027	6,253	0.039	0.051
관목	137,715	0.874	163,754	1.039	0.024

- 본 공원은 신규 조성 공원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은 수목부족 공원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수목생육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수목식재현황 분석결과 키 큰 나무는 부족하고, 키 작은 나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공원으로 체감되는 것은 공원 수목 배치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공원 수목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 본 청원은 율현공원을 숲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량 확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숲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첫째, 군락식재를 포함하여 관목 163,754주를 식재하여 1㎡당 1주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수목이 부족한 공원으로 보여지는 바 식재된 수목량의 점검과 수목의 재배치를 통해 개선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 둘째, 율현공원은 과거 비닐하우스 경작지가 있던 곳에 흙을 쌓아 지형을 높인 공원으로 성토한 토양은 식물이 성장하기 부족하므로 수목 식재기반에 대한 보강이 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공원의 식재는 목표연도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수목식재 밀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일본은 목표연도를 식재 후 10

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²⁾.

따라서 민원에 따라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을 추가 식재하더라도 10년 후의 밀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기존 수목의 철저한 관리와 토양관리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목량, 적합한 수종선정 등 10년 후 울창한 숲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이준복, 심경구, 서울지역 공원녹지 식재밀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조경학회지 26(2) 219-228

첨부 1

〈도시공원의 식재밀도 기준〉

공원종류별	식재밀도				
	교목 (주/m ²)	관목 (주/m ²)	덩굴성 식물 (m ² /m ²)	조형목 (주/m ²)	생울타리 (m ² /m ²)
어린이공원	0.068	0.133	0.109	0.014	0.02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0.051	0.224	0.087	0.002	0.012
근린도보권 공원	0.053	0.203	0.105	0.006	0.011
도시계획 근린공원	0.089	0.198	0.073	0.018	0.006
광역권 근린공원	0.046	0.049	0.035	0.002	0.004
체육공원	0.035	0.163	0.070	0.005	0.043
역사공원	0.055	0.043	0.048	0.005	0.013
동물원	0.051	0.091	0.001	0.000	0.010
식물원	0.264	0.486	0.192	0.010	0.010
풍치공원	0.136	0.119	0.028	0.003	0.003
정원	0.097	0.099	0.161	0.009	0.020
기타	0.036	0.230	0.028	0.003	0.006
평균	0.082	0.170	0.078	0.006	0.014

조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2002, 284쪽



(울현공원 공원조성계획도)